

광주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나68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나6896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가단50733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현규,정규련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22. 3. 3.

판결 선고2022. 3. 24.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가단50733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지급한 50,000,000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원고의 불법성은 미약하므로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의 반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한 시공사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으로 하여금 비자금 조성하여 탈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제공자와 수령자 중 어느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리베이트 명목의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며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하여 제공자와 수령자 중 어느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달리 수령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제공자인 원고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만

판사유상호

판사송인경